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교 통 · 에 너 지 · 환 경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리터당 450원으로 하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리터당 289원으로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423원”을 “45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10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263원”을 “289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탄력세율) ----- ----- -----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	1. ----- ----- --. --- 2024년 12월 31일--- ----- 450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 한다.	2. ----- ----- --. --- 2024년 12월 31일--- ----- 289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